

## 4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

###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도내 1인 관광사업체에 대해 빠른 경영회복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 2 지급 대상

- (소재지)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 4. 17. 이전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 3 지급금액

- 사업체별 현금 100만원 1회 지급(정액)

### 4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급 방법

-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각자)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사업체)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만 지원. \*사업자등록증 기준

## 5 지급 제외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구직청년, 예술인, 소상공인, 택시, 전세버스, 어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체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 6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또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 발급방법 > ※ (주의) 사업장 기준 및 신청일 현재로 발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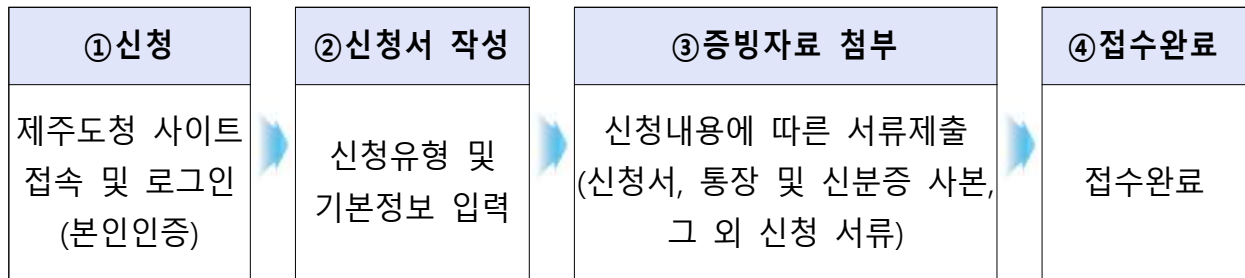
-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증명서발급 - 증명서(사업장명부) 개별신청/발급 선택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연신로 14)

- (추가 서류)
  - (공동대표) 통합위임장
  - (대리신청) 통합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통장 사본
  - \* 법인 대리(위임) 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대표자) 통장계좌 사본

- (가족명의 계좌 수령) 통합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기간) 2022. 8. 1.(월) ~ 8. 16.(화) \*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 (절차/온라인)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회원가입) 후 절차 진행  
\*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배너 창의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클릭



- \* 대표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 대리신청 시에는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방문접수 (☎ 064-710-3342~3, 3345)

## 8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고용보험 가입한 종사자 수 확인,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 (지급) 2022. 8. 10.(수)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예정
-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 이의신청기간: 2022년 8월 17일 ~ 8월 31일

**9****부정수급 환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10****신청 문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제1호 서식>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정 보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종사자수 (고용보험 가입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입 금 계 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이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이 취소·환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인, 서명)			
<b>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b>			
<b>제출서류</b> ※ 해당되는 사항만 제출			
1. 관광사업자등록증(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또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 통장 사본 5. 동의서 6. 통합위임장      * 공동대표자 및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7.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1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및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업무	○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 2. 고유식별정보 동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및 향후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 본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기타 고지: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 2 부정수급 금지

1. 아래 약속인은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2. 아래 약속인이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_\_\_\_\_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통합 위임장**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b>위임사유</b>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공동대표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input type="checkbox"/> 대리 신청 등(사유: _____ )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 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 소			
3. 위임내용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____월 ____일 위임하는 자(위임자): _____ (인, 서명)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이용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및 향후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업무	○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2022년 ____월 ____일 위임받는 자(수임자) : _____ (인, 서명)			
※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가족명의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b>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b>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4호 서식>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타인(가족)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타인(가족)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 계좌	은행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압류계좌, 계좌개설 불가 등 사유에 한함			

신청서 제출에 따른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하오니, 본인의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2022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신청인과 타인(가족)명의 계좌 이용자 간의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1.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의 신청인 ( )가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의 아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 계좌번호 :
- 은행명 :
- 예금주 :
- 주민등록번호 :

2. ( )에게 지급될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 )에게 전해 줄 것을 ‘확약’ 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 및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이의 신청서**

<b>신 청 인</b>	<b>성 명</b>		<b>휴대폰번호</b>	
	<b>업체명</b>		<b>사업자등록번호</b>	
	<b>사업장주소</b>			
<b>안내받은 날짜</b>		2022. . .		
<b>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b>				
<b>구비 서류</b>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b>신청기간 안 내</b>		부지급 안내를 받은 경우 8월 17일부터 8월 31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급불가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_\_\_\_\_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5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 ]

### 1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일상회복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 2 지급 대상

-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자등록증 기준

- (지급대상)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

① 코로나19 기간(2020. 8. 16.~2021. 12. 16.) 폐업자

②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은 폐업자

\* 정부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2021. 12. 17.~2022. 5. 31. 폐업자

③ 2022. 4. 17. 이전 개업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

\* 다수사업체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 타 업체(도 외 지역 포함)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제외

### 3 지급금액

- (지원금) 대표 사업장에 현금 100만원~200만원 1회 지급(정액)

- 폐업자(2020. 8. 16.~2021. 12. 16.) 및 간이과세자: 200만원

- 폐업자(2021. 12. 17.~2022. 5. 31.): 100만원

## 4

###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급 방법

-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 나머지 공동(각자)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사업체) 다수사업체인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만 지원
  - \* 영업 지원과 폐업 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5

### 지급 제외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버스 및 택시기사, 어업인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 용자 제외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 \* 다만,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방역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사망자
  - \* 다만, 지원금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상속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증명서 안의 가족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게 지급 가능함)

## ○ (기본 서류)

- (영업중인 간이과세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영업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 영업 여부 확인 증빙 서류(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1개 제출)

- ①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② 수도, 전기 및 가스요금 납부서(사업장 주소지 및 업체명 납부내역)
  - ③ 영업장 내 직원 월급 지급 내역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2021년)이 0원인 경우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빙 서류로 인정 안 됨. 다만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 \* 최근 3개월 내(2022년 6월~8월) 업체명으로 사업장 주소지에서 납부한 수도, 가스, 전기요금 영수증(다만 사업장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인정 안 됨)
  - \* 직원 급여 지급 내역(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만 인정됨)

- (폐업자, 2020. 8. 16.~2021. 12. 16.) 신청서, 휴·폐업사실증명,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폐업자, 2021. 12. 17.~2022. 5. 31.) 신청서, 휴·폐업사실증명,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급 증명서
-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증명서는 정부에서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 (추가 서류)

- (공동대표) 통합위임장
- (대리신청) 통합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 \* 가족이 아닌 자도 신청 가능함. 다만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만 신청이 가능함

- (가족명의 계좌 수령) 통합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 가족이 아닌 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함. 다만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만 신청이 가능함(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지급은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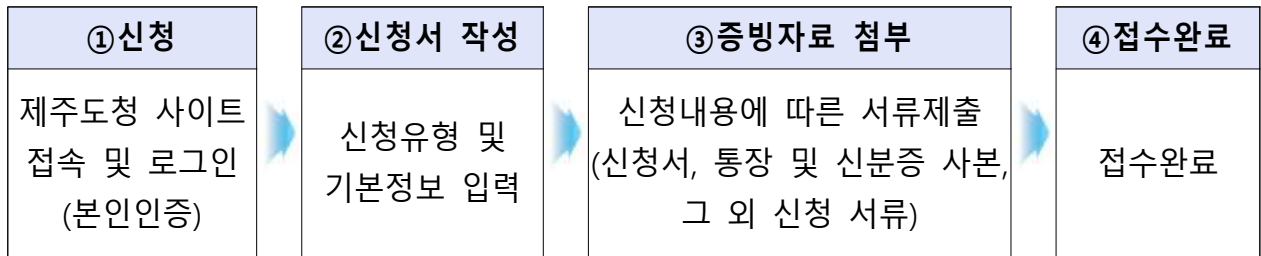
## 7 신청 방법

○ (기간) 2022. 9. 1.(목)~11. 30.(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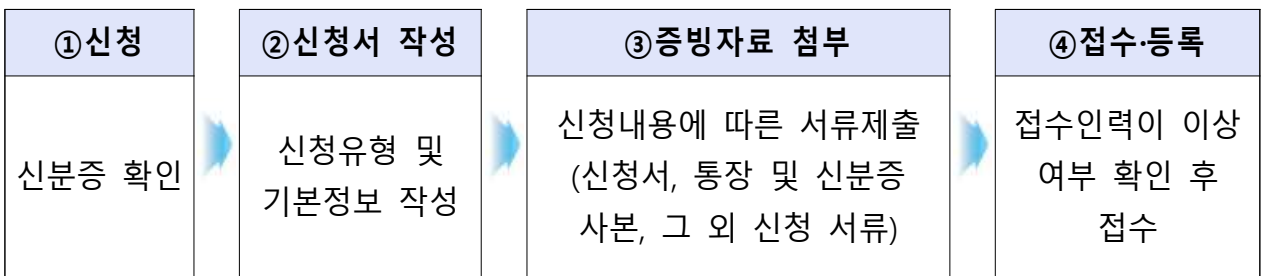
○ (대상) 간이과세자, 폐업자

○ (절차/온라인)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후 절차 진행

\*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배너 창의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클릭 후 신청



○ (절차/현장접수) 신청서 및 신청서류 지참 후 접수창구 방문 제출



○ (현장접수처)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사

\* 현장접수처(제주시) 종합경기장 자동차등록사무소 맞은 편 손실보상창구 옆

\* 현장접수처(서귀포시) 서귀포시 제2청사 지하 손실보상창구 옆

## 8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 (지급) 2022. 9. 1.(목)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확인이 필요하여 2022. 10. 1. 이후 지급
-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 \* 이의신청기간: 2022년 12월 1일~12월 9일

## 9 부정수급 환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 · 부정수급 ·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간이과세자로 신청 당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신청일 이후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임

## 10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도청 소상공인기업과 (☎064-710-3075)

**붙임 1****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제출 서류** (기본) 신청 서류

구 분		기본 서류
간이과세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영업 여부 확인 증빙 서류
폐업자	2020. 8. 16. ~ 2021. 12. 16. 폐업	신청서, 휴폐업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의서
	2021. 12. 17 ~ 2022. 5. 31. 폐업	신청서, 휴폐업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의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급 증빙

 (추가) 신청 서류

구 분	추가 서류
공동대표자	위임장
대리신청자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 명의 계좌 수령자	위임장, 위·수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동의 협약서

\* 위임장은 제3호 서식(통합위임장)으로 제출

\* 신분증은 주민번호 및 주소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1.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및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업무	○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 2. 고유식별정보 동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및 향후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 본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기타 고지: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 3. 소상공인 관련 정책안내 문자 발송 및 통계자료 활용 동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주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문자 발송 및 소상공인 지원 통계자료 활용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업체명, 업종, 지원금 지원여부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 2. 부정수급 금지

- 아래 약속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 아래 약속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_\_\_\_\_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통합 위임장**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b>위임사유</b>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공동대표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input type="checkbox"/> 대리 신청 등(사유: _____ )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 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 소			
3. 위임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____월 ____일 위임하는 자(위임자): _____ (인, 서명)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이용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및 향후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업무	○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2022년 ____월 ____일 위임받는 자(수임자) : _____ (인, 서명)			
※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가족명의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b>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b>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b>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타인(가족)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b>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 계좌	은행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압류계좌, 계좌개설 불가 등 사유에 한함		

신청서 제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하오니, 본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2022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신청인과 타인(가족)명의 계좌 이용자 간의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의 신청인 ( )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의 아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 계좌번호 :
- 은행명 :
- 예금주 :
- 주민등록번호 :

2. ( )에게 지급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 )에게 전해 줄 것을 ‘확약’ 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 및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이의 신청서**

<b>신 청 인</b>	<b>성 명</b>		<b>휴대폰번호</b>	
	<b>업체명</b>		<b>사업자등록번호</b>	
	<b>사업장주소</b>			
<b>안내받은 날짜</b>		2022. . .		
<b>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b>				
<b>구비 서류</b>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b>신청기간 안 내</b>		부지급 안내를 받은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9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급불가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_\_\_\_\_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붙임 3

###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붙임 4

## 중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붙임 5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